



가상강좌 운영규칙

규정번호	3-3-13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4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재학생이나 재교육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본 대학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정의) 본 대학의 가상강좌는 재학생 및 총장이 허락한 자가 수강할 수 있다.

제3조(과정의 구분) 재학생이 수강하는 과정을 정규과정이라 하고, 일반인이 수강하는 과정을 특별과정이라 한다.

제4조(수강신청 및 학점의 인정) ① 본 대학 재학생은 일반 수강신청 기간에 가상강좌에 개설된 정규과정 해당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고,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 교과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특별과정은 총장이 정한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을 받은 과목은 정규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제5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게시) 강좌를 담당할 교수는 반드시 강의의 개요 및 주별 강의계획을 명시한 강의계획서를 작성, 게시하여 학생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강의평가) 이 규칙에 의해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학생 평가 및 점수 비율) 과제물 부여, 시험 등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배점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업관리) 모든 수업방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의한 교수학습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출석수업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9조(수강 인원의 제한) 인원제한이 필요한 강좌는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 이용 제한) 가상강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용계층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통하여서만 가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생 확인) 가상강좌 교육 등록생은 필요시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기술 팀 구성) 가상강좌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운영지원기술팀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